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654호 2022. 2. 7.(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_____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_____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5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_____ 1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5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금지명령 차량 공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_____ 2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_____ 33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2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694 외 2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2.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2-2-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2-17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694 (심곡동)	20090922	천원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2-2-7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보동5로 29-6 (오류등)	점단출장소-27397(2021.08.26.)호에 의거	20121025	보동로에서 다섯번째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54번길 23 (가차등)	건축과-36614(2020.09.03.)호에 의거	20090706	가재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79번길 36 (왕갈등)	점단출장소-4750(2021.02.16.)호에 의거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7번길 104 (왕갈등)	점단출장소-12318(2020.05.12.)호에 의거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삼호
5	인천광역시 서구 신동길 90 (금곡등)	점단출장소-10798(2018.05.01.)호에 의거	20090922	신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6	인천광역시 서구 간지로97번길 59 (석남등)	건축과-11384(2021.09.27.)호에 의거	20090922	간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대성
7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 76-27 (원향등)	건축과-10940 (2021. 9. 23.)호에 의거	20090922	원향의 대표적 향구인 북향을 지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9번길 3 (검암등)	건축과-10992(2021.09.23.)호에 의거	20090922	검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간지로97번길 33-11 (석남등)	건축과-10228 (2021. 9. 17.)호에 의거	20090922	간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다시흥화
10	인천광역시 서구 연개로 29-1 (석남등)	건축과-5315(2021.08.12.)호에 의거	20090922	연개로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11	인천광역시 서구 용도로42번길 9-1 (석남등)	건축과-21907 (2021. 5. 25.)호에 의거	20090922	용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용도로50번길 10-2 (석남등)	건축과-19050(2021.05.07.)호에 의거	20090922	용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경향대로 747 (연희등)	건축과-1597 (2021. 1. 21.)호에 의거	20090710	계양산과 천마산사이 경향이고개를 통과하는 도로구간으로 경향이고개의 한자표기말인 '경향'명칭에서 부여	장고
14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 273-10 (가차등)	건축과-51062(2020.12.14.)호에 의거. (1992.9.30.에 가차등 289-55가 가차등 289-6번지에 합병되어 함소)	20090706	열우물고개를 통과하는 도로로 삼정동의 유래가 된 열우물을 인용하여 제명	
15	인천광역시 서구 중평대로 747 (경서등)	건축과-28663(2020.07.10.)호에 의거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급신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현상생의 호를 따서 제명	
16	인천광역시 서구 열곡로 188 (석남등)	건축과-14756 (2019. 12. 2.)호에 의거	20090922	천일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450번길 51 (공촌등)	건축과-11385(2019.11.04.)호에 의거	20081231	서곶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88번길 28 (석남등)	건축과-10288(2019.10.25.)호에 의거	20090710	길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6-11 (석남등)	건축과-4854(2019.09.03.)호에 의거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0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55 (가차등)	건축과-3191 (2019. 8. 19.)호에 의거	20090706	가재가 많은 개울/시냇을 의미하며, 가차등의 어원이 된 말을 인용하여 제명	가차119안천센터
21	인천광역시 서구 칠천항로 37 (석남등, 대신빌라)	건축과-1467(2019.08.01.)호에 의거	20090922	옛날 이 곳에서 바다까지 칠천보 정도 되어 칠천항이라고 불리어 왔으므로 이를 따 명명	대신빌라
22	인천광역시 서구 칠천항로 33 (석남등, 보성빌라)	건축과-1464(2019.08.01.)호에 의거	20090922	옛날 이 곳에서 바다까지 칠천보 정도 되어 칠천항이라고 불리어 왔으므로 이를 따 명명	보성빌라
23	인천광역시 서구 칠천항로 35 (석남등, 보성빌라)	건축과-1440(2019.08.01.)호에 의거	20090922	옛날 이 곳에서 바다까지 칠천보 정도 되어 칠천항이라고 불리어 왔으므로 이를 따 명명	보성빌라
24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주로 37-1 (가경등)	건축과-42355(2018.07.26.)호에 의거	20090922	가경등의 옛 이름인 "가경주"에서 차명	
25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주로 37-2 (가경등)	건축과-42353(2018.07.26.)호에 의거	20090922	가경등의 옛 이름인 "가경주"에서 차명	
26	인천광역시 서구 견지로249번길 40-9 (석남등)	건축과-38500 (2018. 06. 28.)호에 의거 (2018.7.6.에 석남등 586-70이 석남등 586-2과 합병되어 함소)	20090922	견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로58번길 21 (가차등)	건축과-34188 (2018. 5. 28.)호에 의거	20090922	가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주)신화IND
28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로38번길 21 (가차등)	건축과-32421 (2018. 5. 14.)호에 의거	20090922	가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262번길 19 (가차등)	건축과-31851 (2018. 5. 9.)호에 의거	20090706	열우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2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근거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0. 12. 22. 일부개정 되어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심의회 구성 및 임기 일부 개정(안 제14조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민원봉사과, 전화 560-4273, 팩스 560-28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근거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0. 12. 22. 일부개정 되어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심의회 구성 및 임기 일부 개정 (안 제14조제2항, 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우리 구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생략)</p> <p>② <u>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u></p> <p>③ <u>위원 중 당연직은 경제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구정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3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u></p> <p>④ (생략)</p>	<p>제14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심의회 의 위원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우리 구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25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3차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장애)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정신질환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음주자”를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차별적 용어 규정을 삭제하고 위험한 상황이나 상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도록 함(안 제6조 제2호)

나. 연임제한이 없었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중임은

가능하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10조 제5항)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교육혁신과, 전화 032)560-5754, 팩스 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및 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바람)

※ 우편 발송 의견 제출처

[주 소]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제2청사 교육혁신과 인재양성팀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3차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장애)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정신질환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종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음주자”를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차별적 용어 규정을 삭제하고 위험한 상황이나 상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도록 함(안 제6조제2호)
- 나. 연임제한이 없었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중임은 가능하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10조제5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 해당없음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입관료)”를 “(입장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입관료”를 “입장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입관의 제한 등)”을 “(입장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를 위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를 “관장은”으로, “입관을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를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2.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 금지 또는 퇴장 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제1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하되, 연임할”을 “하고,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2회까지 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입관료) <u>입관료</u>는 무료로 한다.</p>	<p>제5조(입장료) <u>입장료</u>----- ----.</p>
<p>제6조(입관의 제한 등)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를 위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u>입관을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u></u></p>	<p>제6조(입장의 제한 등) <u>관장은 --</u> ----- ----- ----- ----- ----- <u>입장을 금지하</u> <u>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u></p>
<p>1. (생 략) 2.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제3조제1호에 따른 <u>사람 또는 음주자</u></p>	<p>1. (현행과 같음) 2. <u>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u></p>
<p>3. <u>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 위협을 주거나 관내 질서나 분위기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사람</u></p>	<p>3. <u>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u></p>
<p>4. <u>흥기나 폭발물 등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u></p>	<p>4. <u>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 금지 또는 퇴장 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5. <u>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삭 제></p>

<p>제8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u>구청장의 허가를</u> 받아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④ (생략)</p>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u>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신설></p> <p>⑥ ~ ⑩ (생략)</p>	<p>제8조(사용허가 등) ① ----- -----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하고,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 은 2회까지 할</u> -----.</p> <p>⑥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 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⑦ ~ ⑪ (현행 제6항부터 제10 항까지와 같음)</p>
--	---

관계법령 발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의 건 제 출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25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 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2. 7. ~ 2022. 2. 21.(15일간)

2. 공고내용

1. 행정처분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19조9767 등 13건(붙임 참조)		
	차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3)		

3.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7)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19조9767	쏘나타(SONATA)	조*훈	2022. 1. 6.
2	인천32마9443	칼로스1.5SOHC	원*수	2022. 1. 7.
3	90루2160	스타렉스(STAREX)	유*익	2022. 1. 11.
4	35서5658	CL 63 AMG	강*수	2022. 1. 12.
5	82우9915	포터 II (PORTER II)	노*순	2022. 1. 12.
6	32호4149	쏘렌토	**캐피탈(주)	2022. 1. 18.
7	82어5616	토미1.8톤너클크레인	김*순	2022. 1. 20.
8	25러2525	페라리 488 Pista	**캐피탈(주)	2022. 1. 21.
9	134더3220	Mercedes-Benz C220 d 4MATIC	**캐피탈(주)	2022. 1. 25.
10	384무8659	카니발	황*선	2022. 1. 25.
11	17호8258	아반떼 (AVANTE)	**캐피탈(주)	2022. 1. 25.
12	26나2153	SM3	오*수	2022. 1. 27.
13	28더6999	카니발	이*식	2022. 1. 28.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2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해당조항을 현행화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및 위탁 계약기간을 확대하고, 연장기간을 명확히 함 (안 제3조)
- 나.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안 제8조, 안 제8조의2)
- 다. 조례의 하위법규인 지침 준용 내용 삭제(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교육혁신과, 전화 032-560-3102, 팩스 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및 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바람)

※ 우편 발송 의견 제출처

[주 소]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제2청사 교육혁신과 청소년팀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해당조항을 현행화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및 위탁 계약기간을 확대하고, 연장기간을 명확히 함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제8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조례의 하위법규인 지침 준용 내용 삭제(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 1)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연장”을 “5년 이내에서 연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설치·운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u>3년</u> 이내로 하 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u>지역사회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협의회</u>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u>연장</u>할 수 있 다.</p> <p>③ (생략)</p>	<p>제3조(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 ----- <u>5년</u> ----- ----- ----- <u>인천광역시 서구 청소 년복지심의위원회</u>----- ----- <u>5년</u> <u>이내에서</u> <u>연장</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p> <p>① <u>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 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 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 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u></p> <p>1. <u>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목표, 방향 및 비전에 관 한 사항</u></p>	<p>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p> <p><u><삭 제></u></p>

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태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에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관
한 의견 제시

4.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에 관련된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연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
칙」 제23조제2항의 심의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전 제6호에
서 이동 2016.7.8.)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학교지원단의 단장
- 2.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삭 제>

가.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의 생

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나.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또는 인천서부고용복지플

러스지원센터의 청년취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지원시설의 대표자

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아.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

는 청소년 지도자

자. 법률전문가

차. 학부모 대표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④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
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삭 제>

된다.

⑤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년으로 한다.

<삭 제>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삭 제>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

<삭 제>

<p><u>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u></p> <p><u>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u></p> <p>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여성가족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지침」을 준용한다.</p>	<p><u><삭 제></u></p> <p>제12조(준용) <u><삭 제></u></p>
--	--

관계법령 발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3.>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목개정 2021. 3. 23.]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2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심의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통합사례회의 운영, 회의록, 출석 발언,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교육혁신과, 전화 032-560-3102, 팩스 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및 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바람)

※ 우편 발송 의견 제출처

[주 소]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제2청사 교육혁신과 청소년팀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안

1.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라 한다)
2.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초·중등교육법」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장

다.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또는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보호관찰소의 장

아.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젠더전문가, 학부모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

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연중 4회(반기별 각 2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 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